

##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제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제7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마목2)에 해당하는 법인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라 한다)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1서식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

- 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별지 제5호의1서식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별지 제8호서식 주)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금융위원회”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금융위원회”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해당하는 년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포한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8-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금융감독원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호 마목에도 불구하고 선정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보고서는 영 제7조의3에 따라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별표 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기준 및 선정 절차(제10조제1항 관련)

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한다.

가. 최근 3년간 이 법 또는 영 제2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 또는 법 제13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신용점수제 이전 신용등급제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개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대출(담보 또는 보증이 없는 대출을 말한다. 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라 한다)의 잔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체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일 것

2)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1년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반기별 보고서 기준으로 2회 연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이상이었던 법인이, 해당 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나.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미만이었던 법인이, 해당 비율을 60% 이상 또는 선정 시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던 법인이, 해당 잔액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라.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신청시 승인율을, 선정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 및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1월 31일 또는 7월 31일)부터 다음달 15일(이하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별지 제8-2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선정된 이후, 별지 제8-2호서식 제6호의 구비서류를 반기별로 제출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을 해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라.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여부 및 취소 등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마. 금융감독원장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취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경우 선정일(취소일) 직전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실사 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 등록용

【별지 제1-1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법인 / <input type="checkbox"/>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input type="checkbox"/> 본점 <input type="checkbox"/> 지점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소재지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중개업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⑳ 소재지				
㉑ 홈페이지 주소				
㉒ 전화번호(영업소)	㉓ 전화번호(휴대전화)			
㉔ 광고용 전화번호				
㉕ 대표자 주소				
㉖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인 ☐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㉙ 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 · 광역시 · 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 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㉙ 주요 주주·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주주·출자자(1% 초과) 현황

연번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① 대부잔액 ② 매입채권잔액 ③ 업무용 부동산 ④ 업무용 동산(차량 등) ⑤ 현금 및 예치금 ⑥ 기타자산			
부채 총계(B) ⑦ 차입금잔액 ⑧ 기타부채			
순자산(A-B)			

##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경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경영하는 대부업자들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⑩, ㉓, ㉔, ㉕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⑩, ㉕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란 작성)
  - 가. '대부잔액'(⑨) 및 '매입채권잔액'(⑭)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 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 나. 업무용 부동산(㉖) 및 동산 등(㉗)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 차입금(㉘) 및 기타부채(㉙)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 가. 법인의 경우
    -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경영하려는 자
      -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 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시·도지사 등록용

【별지 제5-1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청영업소	① 명칭(상호)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⑧ 소재지 ⑨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⑯ 등록갱신신청사업	② 본점 여부 ⑤ 법인등록번호 ⑦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본점 <input type="checkbox"/> 지점			
	□ 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중개업					
	본점	⑰ 명칭(상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㉑ 대표자 성명 ㉓ 소재지 ㉔ 홈페이지 주소 ㉕ 전화번호(영업소) ㉗ 광고용 전화번호 ㉘ 대표자 주소 ㉙ 사업내용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㉒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㉖ 전화번호(휴대전화)			
		□ 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①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 본, 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 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①		210mm×297mm(일반용지 60g/m <sup>2</sup> )	

㊱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① 대부잔액			
② 매입채권잔액			
③ 업무용 부동산			
④ 업무용 동산(차량 등)			
⑤ 현금 및 예치금			
⑥ 기타자산			
부채 총계(B)			
⑦ 차입금잔액			
⑧ 기타부채			
순자산(A-B)			

##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⑫, ㉕, ㉖, ㉗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⑫, ㉗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란 작성)
  -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 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 가. 법인의 경우
    -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 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제 호

## 교 육 이 수 증

교육일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부(중개)업자 명칭(상호) :

등록기관 :

등록번호 :

### 이수내역

등록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등록 <input type="checkbox"/> 갱신등록 <input type="checkbox"/> 변경등록
등록기관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시·도지사
등록업종	<input type="checkbox"/> 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중개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위 사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소정의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장 인

※ 본 교육이수증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급하였으며, 등록담당자는 한국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여부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신청인	① 명칭(상호)	②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⑦ 대표자 주소	
	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⑪ 명칭(상호)		
⑫ 대표자	성명 주소	
⑬ 업무총괄	성명 사용인	
⑭ 소재지		
⑮ 전화번호(영업소)		
⑯ 광고용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 주소		
⑱ 자기자본(순자산액)		
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⑳ 영위업무	<input type="checkbox"/> 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채권매입추심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중개업 <input type="checkbox"/>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채권매입추심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중개업 <input type="checkbox"/>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변경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㉑ 출자자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명칭 · 성명		
	주소		
	지분율(%)		
2	명칭 · 성명		
	주소		
	지분율(%)		
3	명칭 · 성명		
	주소		
	지분율(%)		
4	명칭 · 성명		
	주소		
	지분율(%)		
5	명칭 · 성명		
	주소		
	지분율(%)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㉒ 임원(감사 포함)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법 제3조 제3항 각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신청서 작성 관련)

1. (15, 16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16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3. (18란 작성)
  -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19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5. (20란 작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1) 변경전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영위업무를 모두 표기한다.
  - 2) 변경후 : 변경 후 영위하려는 업무를 표기하되,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겸업이 금지된 영위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 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 가. 법인의 경우
    -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 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를 의미한다.

##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 법인 / 개인)

신고인	① 명칭(상호)		②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 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설립일	
	⑦ 소재지			
	⑧ 홈페이지 주소			
	⑨ 전화번호(영업소)		⑩ 전화번호(휴대전화)	
	⑪ 광고용 전화번호			
	⑫ 대표자 주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귀하

주) <삭제>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b>3. &lt;삭제&gt;</b>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

신 청 영 업 소	① 명칭(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⑦ 전화번호(영업소)	⑧ 전화번호(휴대전화)		
	⑨ 광고용 전화번호			
	⑩ 대표자 주소			
	⑪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대부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채권매입추심업 <input type="checkbox"/> 대부중개업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주)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 1. 영업소 현황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 · 대부중 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2. 주요 주주 · 출자자 및 임원 현황

#### 가. 주요 주주 · 출자자(1% 초과) 현황

연번	명칭 · 성명	주소	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1				
2				

#### 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출자자 현황

연번	명칭 · 성명	주소	지분율(%)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유
1				
2				

#### 다.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 3. 겸영 현황

연번	상호	업종	대표이사	본사 주소
1				
2				

### 4. 주요 재무현황(최근 3년간 연도말 기준 표준 재무제표, 외부 감사보고서 또는 업무보고서 기준)

연도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영업 이익	전체 대출채권 잔액(A)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B)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B/A)

### 5. 업무보고서 제출현황

연번	보고서 작성기준일	제출일시	확인(보고서 작성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
1			
2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6. 구비서류

#### 가. 저신용자 신용대출 사업계획서 및 현황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규모 및 비중) 관련 단기 및 장기사업 계획 등 포함

#### 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승인율

구분	신청금액(A)	신청건수	승인금액(B)	승인건수	승인율(B/A)
20xx.12말 (신청일 직전 최근 반기 기준)					
20xx.6말*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 이후 반기별 현황을 모두 기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금감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①

## 보증금 반환신청서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 상호 · 명칭 :

## 주 소 :

1. 반환 사유			
2. 반환 사유 발생 연월일			
3. 반환받을 보증금(현금)			
예탁증서번호	당초 예탁금액	예탁자명	반환신청 금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제4항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四

일 월 년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귀중

첨부서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증금 반환통지서

## 1. 반환 시 수령하는 자

상호 · 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반환시기: 년 월 일

### 3. 반환금액: 원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등록신청)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8. (생 략)</p> <p><u>&lt;신 설&gt;</u></p> <p>③ · ④ (생 략)</p>	<p>제3조(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등록갱신) ① (생 략)</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p> <p>1. ~ 11. (생 략)</p> <p><u>&lt;신 설&gt;</u></p> <p>③ (생 략)</p>	<p>제6조(등록갱신)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변경등록) ① (생 략)</p>	<p>제7조(변경등록) ① (현행과 같음)</p>

② 제1항의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한정한다.

## 1. ~ 10. (생 략)

### <신 설>

제10조(등록요건등) ①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  
하여 고시하는 업”은 「전기통  
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  
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서 신설>

###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규정」 제22조제1호마목2)에 해  
당하는 법인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라 한다)에게 대  
부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